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9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이훈기 · 이주희 · 허종식
박 정 · 박용갑 · 이병진
오세희 · 김남근 · 박수현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

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를 “보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로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u>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u>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u> ----- ----- ----- -----.
<u><신 설></u>	<u>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u>
<u><신 설></u>	<u>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u>
<u><신 설></u>	<u>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u>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u>	② ----- - <u>보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